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9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이철규·김소희·박준태

권성동 • 임이자 • 강승규

김선교 • 서일준 • 나경원

조지연 • 이인선 • 박충권

김기현 • 구자근 • 박성민

유상범 · 송언석 의원

(17인)

제안이유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기술의보호는 개별 기업・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전환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 단계부터 차단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시급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차단하고,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외국에

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술 보호 노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제한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수출심의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 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 기술 현행화 및 기술의 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

10항 신설).

- 마.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 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 바.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6호)
- 사.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 아.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안 제36조제2항).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관·전문 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 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

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여 국가핵 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 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절차"를 "절차, 제10항의 수출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

화"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 소화 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4항 전단 중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을 "해외인수·합병등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한다.

제1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7호의2 및 제7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 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

화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할 목적으로"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억원"을 "65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목적으로"를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15년"을 "20년"으로, "15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를 "제4호·제7호·제7호의2 및 제9호"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의 기간 이내에 제9조의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
치 등) ① ~ ⑤ (생 략)	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
	하고,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
	<u> 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u>
	<u>11조의2 및 제12조의 업무를</u>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u>있다.</u>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
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	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	<u><삭 제></u>
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	
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청할 수 있다.	
<u>⑦</u> (생 략)	<u>⑥</u> (현행 제7항과 같음)
<u><신 설></u>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 해당 여
	<u>부 판정 등) ① 기업·연구기</u>

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보유하 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 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업등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판정과 관 런하여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판정 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신 설>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판정신청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의 등록 등) ①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 항의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1. 제9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

 기술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

 하여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

 정을 받은 경우
-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1조제5항 및 제6

- 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
- 3. 기존 대상기관으로부터 국 가핵심기술을 이전받아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 청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해제된 경오
- 2.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 술의 수출 및 제11조의2에 따른 해외인수·합병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여 국 가핵심기술에 대한 권리·자 료·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 3. 대상기관이 국내법인·기업 등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이전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에 대

제9조의2 (생략)

① ~ ⑨ (생 략) <신 설>

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에 따 른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기술 안보센터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 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 (현행 제9조의2와 같 음)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 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 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절차 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

①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생략)

-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 지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① ~ ③ (생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 우 해외인수·합병등이 국가안 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을 달 수 있다.

⑤ ~ ⑫ (생 략)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저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u>다.</u>
<u> </u>
<u>절차, 제10항의 수출</u>
의 승인 및 신고의 면제 또는
간소화
<u>.</u>
①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
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 • 합
병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해외인수·합병등에</u>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중앙
<u>행정기관</u>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 금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략) 6의2. · 6의3. (생략)

<u>7</u>. · <u>8</u>. (생 략)

<신 설>

태조사)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을</u> 제36조(벌칙) ① <u>국가핵심기술이</u>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7의2.·7의3. (현행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같음)
- 8. 9. (현행 제7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 제14조의4(외국에서의 행위에 대 한 적용) 제14조에 따른 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 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가 우수한 대상기관 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외글	구어]서	사-	용히	-거	나	사	용도	17	4]
할	목	·적.	으로	저	14	[조]	제1.	호투	ļ.	=
제3	호/	까ス	기의	어	느	하ા	구에	ਰੋ) L	낭
하는	= '	행우	를	한	자	는	<u> 3년</u>	<u> </u>	17	S)-
의	유	フ] ろ	징역	에	처	한다	구.	(٥	7	검
우	<u>15</u>	억운	<u>]</u> o]	하	의	벌	금을	- H	j j	가
한디	7.									

-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 ·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④ 제14조제4호 및 <u>제8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 ⑧ (생 략)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u>5년</u>
<u>65억원</u> -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
<u>될 것을 알면서</u>
<u>20년</u> -
<u>30억원</u>
·.
③ <u>제4호·제7호</u>
·제7호의2 및 제9호
·.
④ 제9호
⑤ ~ ⑧ (현행과 같음)